변경대비표

1. 대상펀드 : 하나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변경내용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조세특례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효력발생(예정)일 : 2016년 10월 6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5.82%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06%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감면세액 추징**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감면세액 추징**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상당하는 금액 (이하 "추징 세액 "이라 함)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주2)에 따라 해지 전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 재무정보**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별첨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상품 세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1 조]** **감면세액추징**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 상품 세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1 조]** **감면세액추징**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단,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주1)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추징**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단,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합니다.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상당하는 금액 (이하 "추징 세액 "이라 함)을 해당 저축

	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주2)에 따라 해지 전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주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을 해지하는 때에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생략) **5. 투자실적 추이** (생략)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5.82%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5. 투자실적 추이**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06%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